

제1025호 2025. 9. 26.

건설동향

BRIEF_{ing}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9)

- 이슈 1 :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 이슈 2 : 노란봉투법 대안 후속 입법... 통과는 불투명하나 후속 입법 시 고려 되길
- 이슈 3 : 계속된 산업재해 관련 입법 러시... 규제와 처벌 강화의 편향성에 대한 경계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8.25~'25.9.21)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9)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지난달(2025.8.25.~9.21) 국회에서는 총 793건의 법률이 신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법률안은 68건(8.6%)에 달함.

이렇듯 통상 대비 많은 수의 건설산업 관련 신규 법안이 발의된 점은 그만큼 최근 건설산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해석 가능함.

특히 이달에만 하더라도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만 하더라도 11건이 신규 입법되었고 그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의 입법 개정안이 모두 건설안전 사고 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발의되었다는 점은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까지 모두 모든 관심과 역량이 건설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도 할 수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제 강화가 예상됨.

이슈 1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인 「행정규제기본법」은 법 제정 시기인 지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규제의 남설(濫設)을 제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근거 법률의 역할을 수행함.
- 규제당국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통한 시장과 산업의 규율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규제 일몰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한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규제 합리화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허나,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정규제기본법」을 무력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특히 이달에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의 경우 규제당국의 소명만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미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안까지 발의됨.
- 지난달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251호)의 경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관련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 각 부처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동일 사유¹⁾로 이달에는 다시금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3054호)을 통해 이미 헌법재판소 판시²⁾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가 중앙부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중앙부처는 이를 무시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꾀할 수 없기에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였더라도 중앙부처가 이를 소명하였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 규제의 경우 정부의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무력화하여 규제당국의 규제 신설과 강화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깊은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이미 규제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가 산적한 상황이며, 동일한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중층적 규제가 만연한 상황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무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아닌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사안별 소관 부처의 장을 분과위원회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안³⁾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함.

이슈 2 노란봉투법 대안 후속 입법… 통과는 불투명하나 후속 입법 시 고려 되길

- 지난 8월 24일 본 회의 통과 및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을 통해 입법이 완료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과 관련하여 야당(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보완 법안을 발의함.
- 노란봉투법의 경우 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여러 혼선이 예상⁴⁾되기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함.
- 해당 입법과 관련하여 2건의 입법(통칭 ‘공정노사법’)이 발의되었는데 우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9호)의 경우 기업의 최소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

1) 입법안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두 차례나 권고하여 고용노동부의 규칙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져 비판 여론이 비등한 뒤에야 3차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사례를 개정의 문제 사례로 제시함.

2) 헌법재판소 2007.2.22. 선고 2003헌마428, 600(병합) 결정문

3)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20명(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건설산업과 관련한 혼선에 관해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1021호(20258.29) 참조

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임.

- 이와 유사하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823호)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안의 경우 제42조제1항의 개정 및 제43조의 삭제와 별칙 조항인 제91조 개정을 담고 있으며, 조지연 의원안의 경우 제42조제1항의 개정 및 제43조의 삭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적으로 별칙 조항 개정 여부만이 차이임.
- 입법안과 같이 제43조가 삭제된다면, 당연히 이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는 제91조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입법안의 내용은 사실상 목적과 내용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안들은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에서 발의된 점을 고려할 때 보완 입법의 통과는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허나, 짧은 6개월의 「노란봉투법」 유예기간(~'26.3.10)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구체적 지침·매뉴얼 마련과 병행하여 입법부에서도 현장의 혼선과 산업 충격 최소화를 위한 활발한 보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이슈 3 계속된 산업재해 관련 입법 러시... 규제와 처벌 강화의 편향성에 대한 경계는?

- 지난 7.29 국무회의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 관련 논의를 기점으로 이의 후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⁵⁾' 등 산업재해 사망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에 발맞추어 입법부 또한 지난달부터 산업안전 관련 복수의 입법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7건을 포함 총 9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이달에도 16건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됨.
- 구체적으로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445호)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경우 중대재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며, 조사의 대상을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제안함.
- 또한, 이용우 의원은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안(의안번호 제12487호)을 통해 현행 사업

5) 관계 부처 합동, 노사정의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 위험성평가를 미시행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사업주가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사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및 처벌 강화 법안을 제시함.
- 이 외에도 이용우 의원은 다른 입법안(의안번호 제12499호)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법정계획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 중대재해 감축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집중관리 방안과 더불어 건설공사·소규모 사업장·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이용우 의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과 더불어 이달 마지막으로 추가적 입법안(의안번호 제12873호)을 발의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건설공사 발주자가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평가하며, 원도급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차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기존 발주자에게 부과하던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도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 이를 계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596호)을 통해 이미 여러 입법안이 계류 중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과 더불어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이와 더불어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함.
- 손술 의원은 통상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을 꾀하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제12636호).
-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심야 장시간 노동이기에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 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발의함.
- 이주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716호)을 통해 현행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그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함.

- 박홍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746호)을 통해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형식상 지위·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도록 강화하는 입법안과 더불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매출액의 2%(최근 3년 이내 동종 또는 유사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874호)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및 집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가 저해되고 있기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 또한 김위상 의원은 다른 입법안(제12983호)을 통해 현행법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작업중지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도록 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장철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812호)을 통해 현행법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 책임 강화 및 실질적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기에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이내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최대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발의함.
- 이강일 의원의 경우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3058호)을 발의하며 현행법에서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 이학영 의원은 산업안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3114호)을 발의함.
- 이종배 의원은 지금까지 살펴본 산업안전이 아닌 시설물 안전과 관련하여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38호) 발의를 통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가 아닌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하 개발사업에서도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당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이처럼 현재 입법부는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입법 러시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 해소의 입법안이거나 정부가 既 발표한 정책(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청부 입법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입법안의 경우 규제와 처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예상됨.
- 대표적으로 다수 사망사고 시 부여하는 과징금 신설에 관한 사항임.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로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발표하였으나,
- 이와 별도로 장철민 의원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여의 내용을 발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박홍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매출액의 2% (최근 3년 이내 동종 또는 유사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42%)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함.
- 더욱이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안번호 제11151호) 제정을 통해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복수 법률에서 이를 각기 처분하는 것은 과중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산업재해 관련 개별 법률은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비롯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 법률에서 중복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처벌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행정처분 과벌에 대한 명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정립 및 감경 규정 마련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뿐만이 아니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와 처벌 신설에 따른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역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함께 수반되기를 희망함.
- 일례로 정부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규칙 위반 50만원/건, 고의 위반 500만원/건)하였으며, 이학영 의원 입법안(의안번호 제13114호)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 실제 건설 현장의 경우 산별노조의 자기 소속 근로자 채용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8.25~'25.9.21)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 [의안번호: 제12333호(이헌승송기헌 등 24인)] ('25.8.25. 법률 제정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최대 분포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인 세대와 달리 건강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활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현재 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동주택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고령친화적 주거 공간과 건강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요양 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 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 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돌봄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령자 돌봄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고령자 돌봄주택을 설치·공급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전문인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가 고령자 돌봄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령자 돌봄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강 자료 및 소득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는 10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고령자 돌봄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 돌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령자 돌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록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고령자 돌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고령자 돌봄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의된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령자 돌봄주택사업자는 고령자 돌봄주택의 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등록하지 않고 고령자 돌봄주택을 설치·공급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대기간 중에 고령자 돌봄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법률명	주요 내용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344호(김대식 의원 등 10인)] (‘25.8.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 제고(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 제46조의2 신설) ▪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의무화 ▪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근거 신설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상생 협력법」	• [의안번호: 제12354호(정동만 의원 등 10인)] (‘25.8.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의안번호: 제12358호(한준호 의원 등 10인)] (‘25.8.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 -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선이 필요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제안방향)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 마련 ▪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제35조), 그 밖 인용 조항 보완(제6조의2)
「도시가스 사업법」	• [의안번호: 제12362호(최은석 의원 등 11인)] (‘25.8.2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 방법 및 존속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특히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 - (제안방향)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
「국유재산법」	• [의안번호: 제12364호(이재강 의원 등 12인)] ('25.8.2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 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 지원(안 제44조 단서 신설)
「건축사법」	• [의안번호: 제12374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8.2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건축사는 건축 안·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안·허가 대리 행위를 수행 중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안·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 하여 건축 안·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사의 건축 안·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제2항제7호)
「농어촌특별세법」	• [의안번호: 제12375호(최은석 의원 등 10인)] ('25.8.2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별도의 납부 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제안방향)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하도급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397호(정무위원장)] ('25.8.26. 일부개정 발의, 본회의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하기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원도급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하도급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 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2402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5.8.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장·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장·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제안방향)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장·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최저 임금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403호(윤준병 의원 등 11인)] ('25.8.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독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운영 중으로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등)
「하수도법」	• [의안번호: 제12406호(박상웅 의원 등 12인)] ('25.8.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나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추진 - (제안방향)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개정(안 제4조의3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의안번호: 제12439호(황운하 의원 등 10인)] ('25.8.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

법률명	주요 내용
	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판단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445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8.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수행 중 -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개선 추진 - (제안방향)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안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의안번호: 제12467호(천춘호 의원 등 10인)] ('25.8.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 또한, 최근 현행법 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 - 하나,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상존 - (제안방향)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 [의안번호: 제12478호(박정훈 의원 등 10인)] ('25.8.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 현황을 '사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 신고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 (제안방향)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 원천 차단(안 제8조제9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2487호(이용우 의원 등 12인)] ('25.8.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 대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처벌 강화	- 우리의 경우 현행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의무화 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개선 ▪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안 제36조제1항) ▪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안 제36조제2항)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제,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3항 신설)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 의무 부여(안 제36조제4항 신설)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5항) ▪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6항 신설)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71조제1호)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72조)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2499호(이용우 의원 등 13인)] ('25.8.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필요 시점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 관리 방안,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 등 정규직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4조의2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529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5.8.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선 필요 ▪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 - (제안방향)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안 제35조제2항제3호)

법률명	주요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12536호(김용태 의원 등 12인)] (‘25.8.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가 기준 -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리모델링사업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하수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537호(박용갑 의원 등 18인)] (‘25.8.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유출 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제안방향) 지하수 및 유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과 더불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1호의2 신설)
「건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559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5.9.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방지를 위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 차단 성능 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49조제4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584호(서미화 의원 등 10인)] (‘25.9.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 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확대를 유도(안 제6조)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596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9.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 내포 -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만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 - 또한,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52조, 제170조)
「주택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599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5.9.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해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 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41조의2 등)
「공정 거래법」	• [의안번호: 제12618호(김남근 의원 등 20인)] ('25.9.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 (제안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 상품불법영업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 의결을 전제
「국가 재정법」	• [의안번호: 제12619호(김남근 의원 등 20인)] ('25.9.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및 방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법률명	주요 내용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안 별표2 제72호 신설) ※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 의결을 전제
「근로기준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636호(손솔 의원 등 10인)] ('25.9.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야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을 지목 ▪ '22년 60명, '23년 55명, '24년 63명이고, '25년에도 계속 발생 중으로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연구원의 '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 - (제안방향)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안 제56조의2 신설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638호(이종배 의원 등 21인)] ('25.9.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규정 - 하지만 도심자영업자노후기반시설 밀집 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 반영 필요 - (제안방향)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가재정법」	• [의안번호: 제12650호(박형수 의원 등 10인)] ('25.9.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 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 (제안방향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안 제38조 등)

법률명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의안번호: 제12679호(김은혜 의원 등 12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안 제42조, 제43조, 제91조)
「건축법」	• [의안번호: 제12680호(박홍근 의원 등 10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운영 중 -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 건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일례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 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 존재 - (제안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안 제61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의안번호: 제12682호(조지연 의원 등 10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 중 -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근로기준법」 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683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임금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으로 이러한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은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 이러한 임금체불 억제를 위해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임금체불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현행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7조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임금채권 보장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701호(박홍배 의원 등 11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 ▪ '24년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00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지급금 환수율은 '19년 34.3%에서 '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 - (제안방향①)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②)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해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8조의3 신설)하고,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벌칙 조항을 신설(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702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 -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 시급 - (제안방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하도급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704호(박홍배 의원 등 13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에게 지급정자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하도급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안 제14조의2 신설)
「건설산업 기본법」	• [의안번호: 제12705호(박홍배 의원 등 14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4.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도급자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 - (제안방향)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 이해 증진 및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건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707호(박홍배 의원 등 12인)] ('25.9.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9.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52조의7, 제113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2708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9.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 중 ▪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안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716호(이주희 의원 등 26인)] ('25.9.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 ▪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 할 필수서류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 -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조사, 책임 규명에 필수적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 ▪ 일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 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 ▪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 존재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법률명	주요 내용
	될 필요 - (제안방향)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2 등)
「중대재해 처벌법」 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2746호(박홍배 의원 등 12인)] ('25.9.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상황 -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 - (제안방향)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제도도 신설(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국가재정법」	• [의안번호: 제12759호(송언석 의원 등 11인)] ('25.9.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 중 - 이에 지침에서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6항 신설)
「공정거래법」	• [의안번호: 제12779호(김현정 의원 등 13인)] ('25.9.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 중 -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안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 의결을 전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제12786호(박선원 의원 등 14인)] ('25.9.8.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은 상황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롭게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등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

법률명	주요 내용
	려움 상존 - (제안방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동등하게 교환(안 제6조) ▪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부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하고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안 제7조) ▪ 이전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최종 합의각서 체결 이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 기부 대 양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 마련(안 제8조) ▪ 사업시행자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11조) ▪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가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의 각종 규제 특례 부여(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종전부지 활용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인가허가 등에 대한 특례 부여(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805호(염태영 의원 등 10인)] ('25.9.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 - (제안방향)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 [의안번호: 제12812호(장철민 의원 등 11인)] ('25.9.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온 상황 - 현행법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 - (제안방향)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 부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이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824호(장철민 의원 등 12인)] ('25.9.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법률명	주요 내용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858호(장철민 의원 등 11인)] ('25.9.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의 손괴에 기인하므로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가장 먼저 규정 중 - 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 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 시설,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손괴될 경우에도 '건축물'이 손괴되는 경우 못지않게 인적·물적 피해가 크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손괴와 건축설비의 손괴가 혼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 (제안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안 제14조제1항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의안번호: 제12864호(이기현 의원 등 11인)] ('25.9.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3.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 -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873호(이용우 의원 등 13인)] ('25.9.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게 한해 부여 중 - 하지만 건설 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하도급자(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 (제안방향)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874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5.9.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 부여(안 제24조제4항)
「국가재정법」	• [의안번호: 제12906호(이성윤 의원 등 13인)] (‘25.9.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 -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구각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 - (제안방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3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913호(서영교 의원 등 10인)] (‘25.9.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상황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 - (제안방향) 상기 특례들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983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5.9.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 중지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 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나, -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 중지제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 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 중지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 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2997호(전현희 의원 등 11인)] (‘25.9.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 중이나,

법률명	주요 내용
차별 강화	-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안 제67조제5항)
「외국인 고용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014호(김상훈 의원 등 10인)] ('25.9.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달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꼽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 상황 - (제안방향)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 용어·안전 수칙·상황별 대처 능력 등 맞춤형 검정 기준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안 제7조 등)
「하도급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018호(이강일 의원 등 12인)] ('25.9.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도급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22헌마430)한 바 있어 국외사업자가 원도급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중 -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 발생 중 - (제안방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도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 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석면안전 관리법」	• [의안번호: 제13027호(안호영 의원 등 10인)] ('25.9.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 준공된 석면 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석면 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 - (제안방향)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041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9.17.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안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으나, -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 안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 - (제안방향)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안허가에 「산업단지 안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주택법」	• [의안번호: 제13044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9.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제안방향)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의5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054호(김정호 의원 등 10인)] ('25.9.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 중 - 헌법재판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2007.2.22. 선고 2003헌마428, 600(병합) 결정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무시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중 ▪ 단적인 예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해당 조항의 철회를 두 차례나 권고하여 고용노동부의 규칙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져 비판 여론이 비등한 뒤에야 3차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사례 존재 ▪ 특히 국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10.22., 일부개정)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유명무실해 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규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여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마련(안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058호(이강일 의원 등 12인)] ('25.9.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라 함)는 전통적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큰 상황 - (제안방향)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안 제77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3075호(이종욱 의원 등 10인)] ('25.9.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중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1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109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9.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선로 등의 시설물의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명시(안 제24제2항제8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114호(이학영 의원 등 10인)] ('25.9.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 유도 필요 - (제안방향) 신고포상금제 도입(안 제158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 ▪ 구체적 포상금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 하위법령 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	• [의안번호: 제13117호(진성준 의원 등 15인)] ('25.9.18.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 -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 필요 - (제안방향)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2제2항) ▪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토록 규정(안 제25조제3항 신설)
「도로법」	• [의안번호: 제13130호(이연희 의원 등 17인)] ('25.9.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교통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해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 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중 ▪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 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규정 가능 -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 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 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주택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147호(복기왕 의원 등 12인)] ('25.9.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 불편과 입주인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을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 중 ▪ 그런데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법률명	주요 내용
	등의 보완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지적 - 또한,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 근거가 부족한 문제 상존 - (제안방향) 따라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 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 점검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 기여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제89조제5항 신설)